

변경 대비표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핀셋 중소형 증권투자신탁[주식]
- 변경 사항: ①운용전문인력 변경(김상진, 이동현 → 이경은, 정무일)
 - ②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 - ③반기 기준으로 갱신
- 효력발생일: 2020. 9. 10.
-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06.18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책임운용역 : 김상진 부책임운용역 : 이동현 2020.1. 31 기준	<u>책임운용역 : 이경은</u> <u>부책임운용역 : 정무일</u> <u>2020.8. 31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운용전문인력 변경	-	<u>2020.09.10 :</u> <u>운용전문인력 변경(김상진, 이동현 → 이경은, 정무일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책임운용역 : 김상진 부책임운용역 : 이동현 2020.1. 31 기준	<u>책임운용역 : 이경은</u> <u>부책임운용역 : 정무일</u> <u>2020.8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1. 31 기준	<u>2020.8. 31 기준</u>
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운용전문인력 변경	-	<u>책임운용역</u> <u>김상진 :</u> <u>2019.03.29~2020.09.09</u> <u>이경은 :</u> <u>2020.09.10~현재</u> <u>부책임운용역</u> <u>이동현 :</u> <u>2017.12.19~2020.09.09</u> <u>정무일 :</u> <u>2020.09.10~현재</u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<u>납입요건</u>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</u> <u>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</u> <u>금액 이내</u> <u>가. 연</u> <u>1,800만원(퇴직연금, 타</u> <u>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</u> <u>제 91 조의 18 에 따른</u>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</u> <u>계약기간 만료일 기준</u> <u>잔액을 한도로</u>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</u> <u>연금계좌로 납입한</u> <u>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</u> <u>납입한 날이 속하는</u> <u>과세기간의 연금계좌</u> <u>납입액</u> <u>공제제도</u> <u>연간 저축금액 중</u> <u>400만원 한도로 12%에</u> <u>해당하는 금액을</u> <u>세액공제</u> <u>- 종합소득금액</u> <u>4,000만원 이하이거나</u>
			<u>공제제도</u> 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</u> <u>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</u> <u>참조</u>

총급여액 5,500 만원
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
 경우) 일 경우 15%에
 해당하는 금액을
 세액공제
 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
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
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
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
 연간 저축금액 중 300
 만원 한도로 12%에
 해당하는 금액을
 세액공제
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
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
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
 금액을 합산하여 연
 700 만원 한도로 12%에
 해당하는 금액을
 당해연도
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
 공제합니다. 다만,
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
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
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
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 6. 18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 6. 18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 6. 18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1. 31 기준	<u>2020.8. 31 기준</u>
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

사항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